<예제>

**A.회사 정보**

\_ 회사명 : PT ABC

\_ 납세번호 : 01.234.567.8623.000

\_ 주소 : Jl Ciwuan No.43 Malang

\_ 사업종목 : 국내무역업

\_ 회계장부 : 외부회계감사 받지 않음

\_ 세무컨설팅 : 사용하지 않고 회사 자체 신고.

\_ 주주 및 이사회

1. Wahyu T, 주소 Jl Ciwulan No.43 Malang, 납세번호 08.234.567.8-623.000, 전체 주식의 50%소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Rp 500,000,000. 직책은 감사
2. Nabila Q, 주소 Jl Cuwulan No.43 Malang, 납세번호 08.345.678.9-623.000, 전체 주식의 나머지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총액은 Rp 500,000,000. 직책은 이사

**B.2011년도 회사 손익계산서**

\_ 총 매출액 Rp 9,500,000,000

\_ 매출 원가 Rp 7,800,000,000

\_ 매출 총이익 Rp 1,700,000,000

\_ 영업 비용 Rp 1,040,000,000

1. 급여, 보너스, 러바란 보너스 및 퇴직금 Rp 120,000,000
2. 근로소득세 Rp 6,000,000
3. 운송료 Rp 40,000,000
4. 영업비 Rp 20,000,000
5. 골프 회원권 Rp 30,000,000
6. 직원 교육비 Rp 70,000,000
7. 유지 보수비 Rp 80,000,000
8. 사무실 임대료 Rp 60,000,000
9. 건물 유지 보수비 Rp 50,000,000
10. 외상매출금 대손 Rp 45,000,000
11. 여비 교통비 Rp 35,000,000
12. 접대비 Rp 54,000,000
13. 전기 수도 통신비 Rp 35,000,000
14. 독립기념일 행사 기부금 Rp 10,000,000
15. 사무용품비 Rp 75,000,000
16. 경비 유니폼 및 작업안전도구 Rp 60,000,000
17. 재산세 및 수입인지료 Rp 30,000,000
18. 직원 식음료비 Rp 20,000,000
19.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Rp 20,000,000
20. 화재보험료 Rp 25,000,000
21. 생명보험료 Rp 15,000,000
22. 건강보험료 Rp 20,000,000
23. 의료비 Rp 30,000,000
24. 지역사회 발전기금 Rp 40,000,000
25. 야유회비 Rp 50,000,000

\_ 영업 외 비용 Rp 70,000,000

1. 임대창고 수리비 Rp 20,000,000
2. 토지매매 수수료 Rp 35,000,000
3. 환차손 Rp 15,000,000

\_ 기타 수익 Rp 285,000,000

1. 창고임대료 Rp 90,000,000
2. 토지매매 Rp 80,000,000
3. 기계임대료 Rp 40,000,000
4. 예금이자 Rp 25,000,000
5. 배당 Rp 50,000,000

\_ 2011년 순이익 Rp 875,000,000

\*참조사항

1. 외상매출금 대손은 채무자 주소이전 및 추적불가로 대손 인식한 것임.
2. 의료비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협력하는 지정 병원에 지급한 것임.
3. 배당은 PT ABC가 40%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PT XYZ로부터 받은 것임.
4. 매출원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1년 1월 1일 기초재고 Rp 1,500,000,000
6. 매입액 Rp 9,000,000,000
7. 2011년 기말재고(12월 30일) Rp 2,700,000,000
8. 매출원가 Rp 7,800,000,000
9. 2011년 1월 1일 현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을 사용하였다.
10. 2011년 세금과 공과는 다음과 같다.
11.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Rp 6,000,000
12. 정부기관이 징수한 소득세(22조) Rp 25,000,000
13. 상대방이 징수한 소득세(23조) Rp 600,000
14. 선납 법인세 Rp 18,000,000
15. 건물임대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Rp 6,000,000
16. 창고임대에 대한 최종분리과세 Rp 9,000,000

<답변>

인니 소득세법 6조는 손금산입에 대해 그리고 9조는 손금 불산입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6조와 9조의 내용에 따라 하나씩 세무조정 해 나가면 되겠슴.

A.2011년 순이익 Rp 875,000,000

B.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항목

1. 근로소득세 Rp 6,000,000
2. 골프회원권 Rp 30,000,000
3. 외상매출채권 상각 Rp 45,000,000
4. 독립기념일 찬조금 Rp 10,000,000
5. 의료비 Rp 30,000,000
6. 지역발전기금 Rp 40,000,000
7. 야유회비 Rp 50,000,000
8. 임대창고 보수비 Rp 20,000,000
9. 판매토지 수수료 Rp 35,000,000
10. 합계 Rp 266,000,000

C.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

1.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Rp 66,000,000
2. 창고임대수익 Rp 90,000,000
3. 토지매매수익 Rp 80,000,000
4. 예금이자 Rp 25,000,000
5. 배당 Rp 50,000,000
6. 합계 Rp 311,000,000

D.법인세 과세 소득 Rp 830,000,000

상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계정 | 조정전 | 부(+)의 효과 | 감(-)의 효과 | 조정후 |
| 매출액 | 9,500,000,000 |  |  | 9,500,000,000 |
| 매출 원가 | 7,800,000,000 |  |  | 7,800,000,000 |
| 매출 총 이익 | 1,700,000,000 |  |  | 1,700,000,000 |
| 영업 비용 |  |  |  |  |
| 1. 급여 | 120,000,000 |  |  | 120,000,000 |
| 1. 근로소득세 | 6,000,000 | 6,000,000 |  | 0 |
| 1. 운송료 | 40,000,000 |  |  | 40,000,000 |
| 1. 영업비 | 20,000,000 |  |  | 20,000,000 |
| 1. 골프회원권 | 30,000,000 | 30,000,000 |  | 0 |
| 1. 직원교육비 | 70,000,000 |  |  | 70,000,000 |
| 1. 유지보수비 | 80,000,000 |  |  | 80,000,000 |
| 1. 사무실 임대료 | 60,000,000 |  |  | 60,000,000 |
| 1. 건물유지보수비 | 50,000,000 |  |  | 50,000,000 |
| 1. 외상매출금 대손 | 45,000,000 | 45,000,000 |  | 0 |
| 1. 여비교통비 | 35,000,000 |  |  | 35,000,000 |
| 1. 접대비 | 54,000,000 |  |  | 54,000,000 |
| 1. 전기, 수도, 통신비 | 35,000,000 |  |  | 35,000,000 |
| 1. 독립기념일 찬조 | 10,000,000 | 10,000,000 |  | 0 |
| 1. 사무용품비 | 75,000,000 |  |  | 75,000,000 |
| 1. 유니폼 및 안전용품 | 60,000,000 |  |  | 60,000,000 |
| 1. 재산세 및 인지세 | 30,000,000 |  |  | 30,000,000 |
| 1. 직원 식음료비 | 20,000,000 |  |  | 20,000,000 |
| 1. 감가상각비 | 20,000,000 |  | 66,000,000 | 86,000,000 |
| 1. 화재보험료 | 25,000,000 |  |  | 25,000,000 |
| 1. 생명보험료 | 15,000,000 |  |  | 15,000,000 |
| 1. 건강보험료 | 20,000,000 |  |  | 20,000,000 |
| 1. 의료비 | 30,000,000 | 30,000,000 |  | 0 |
| 1. 지역사회 발전기금 | 40,000,000 | 40,000,000 |  | 0 |
| 1. 야유회비 | 50,000,000 | 50,000,000 |  | 0 |
| 영업 외 비용 |  |  |  |  |
| 1. 임대창고 수리비 | 20,000,000 | 20,000,000 |  | 0 |
| 1. 토지매매 수수료 | 25,000,000 | 35,000,000 |  | 0 |
| 1. 환차손 | 15,000,000 |  |  | 15,000,000 |
| 영업 외 수익 |  |  |  |  |
| 1. 창고임대수익 | 90,000,000 |  | 90,000,000 | 0 |
| 1. 토지매매수익 | 80,000,000 |  | 80,000,000 | 0 |
| 1. 기계임대수익 | 40,000,000 |  |  | 40,000,000 |
| 1. 예금이자 | 25,000,000 |  | 25,000,000 | 0 |
| 1. 배당 | 50,000,000 |  | 50,000,000 | 0 |
| 당기 순이익 | 875,000,000 | 266,000,000 | 311,000,000 | 830,000,000 |

그럼, 손금불산입 내용을 간략히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근로소득세 – 소득세법 9조 1항, h에 의거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 납세자는 회사가 되겠지만 실제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개인이기 때문이다다. 하지만 만일 근로소득세를 직원 개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직원들을 대신하여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다면 이경우엔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회사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손금산입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2. Tunjangan pajak 즉,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 개개인의 소득의 증가로 간주되어 근소소득세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즉, 근로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므로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슴.
3. 하지만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해 준다면 이는 직원들에게 facility를 제공하는게 되므로 직원의 소득증가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러므로 회사로 하여금 비용처리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인세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

즉, Tunjangan pajak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준다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슴.

1. 골프회원권 – 소득세법 9조 1항, b에 의거, 주주 혹은 임원 개인 용도의 비용은 손금 불 산입 된다.
2. 독립기념일 찬조금 – 기부금은 소득세법 6조 1항, i에서 m까지 정리된 즉, 국가가 지정한 재난, 국가가 지정한 교육 및 체육사업에 관한 기부 혹은 국가가 지정한 단체에 기부된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의료비 – 소득세법 9조 1항, e에 의하면 직원에게 제공한 natura 및 kenikmatan은 비용으로 떨 수 없슴. Natura는 직원에게 쌀, 생필품과 같은 물건을 제공한 것을 natura라 하며 kenikmatan은 차량, 의료지원 및 숙소제공과 같은 facility를 제공하는 것을 일컬음. 두가지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바, 이를 제공한 회사로 하여금 비용으로 떨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인세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임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슴.
4. 지역발전기금 – 상기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가 인정한 단체 및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기부금, 증여 및 보조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야유회비 – 소득세법 6조 1항, a는 손금산입비용을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사업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야유회비는 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 되었슴.
6. 임대창고 보수비 – 분리과세임
7. 판매토지 수수료 – 분리과세임

손금 불산입 및 익급 산입의 구체적 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신고서에 기재하는 신고 요령은 다음의 엑셀 파일을 참조.

수고하셨습니다